# 감 사 결 과 처 분 서

| 연번 | 지 적 사 항 | 처분 |
|---|---|---|
| 1 | **통합대학 ○○○○ 관리 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**<br><br>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, 「한경국립대학교 직원 취업규칙」 제8조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 직무를 신의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,<br><br>- □□□□는 ◇◇◇ 효율적 관리 명분으로 '통합대학 ○○○○ 관리시스템'을 도입·활용 계획(안)을 수립 후 대학통합지원금(금액: 128,250,000원)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도입(2024.2.28.) 하였으나 도입 이후 감사 종료일(2024.8.9.) 현재까지 전혀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○ **행정상처분**<br>- **<기관통보>** |



# 감 사 결 과 처 분 서

| 연번 | 지 적 사 항 | 처분 |
|---|---|---|
| 2 | **△△△ 과정 수강료 납부처리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**<br><br>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, 「한경국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」 제15조에 따르면 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, 「단체협약」, 「취업규칙」 및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있으며, 「단체협약」 제38조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<br><br>○ □□□□ 업무상호 협력협약서에 "□□□□는 해당 ○○기관에 수임료 또는 급여를 제공할 의무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"라고 되어있고, 단서 조항으로 "쌍방 간의 협의 또는 계약을 맺어 추진한 사업일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"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,<br><br>- □□□□는 ○○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△△△과정에 ◇◇◇을 모집하면서 ○○업체와 쌍방 간 별도의 협의 또는 계약 체결 없이 △△△과정에 ◉◉◉ 운영계획(안)에 수강료 감면율을 정하고 □/□/□과 ▽▽▽ 간의 업무협의만으로 수강료 감면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○업체가 사전에 땐(사전 공제) 후 차액만을 □□□□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<br><br>- 또한 해당 ○○업체들이 수강료를 사전에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□□□□로 납부하였음에도 □□□□는 전액 수강료 납부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실제 수강료 납부 금액과 다르게 ◇◇◇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| ○ **신분상 처분**<br>- **<중징계> 2명**<br>**<경고> 1명** |

# 감 사 결 과 처 분 서

| 연번 | 지 적 사 항 | 처분 |
|---|---|---|
| 3 | **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**<br><br>○ 「한경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」Ⅶ-5. 한경국립대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이 총장에게 귀속된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 후 예산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도,<br><br>- □□□□에서는 △△△과정에 참여하는 ◇◇◇의 수강료를 자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수납하면서 매 학기 등록인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입금으로 수납하고 남은 수강료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ㅇ **신분상 처분**<br>**- <주의> 2명**<br><br>ㅇ **행정상처분**<br>**- <기관통보>** |



# 감 사 결 과 처 분 서

| 연번 | 지 적 사 항 | 처분 |
|---|---|---|
| 5 | **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**<br><br>○ 「한경국립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」Ⅲ. 비목별 지침 4. 업무추진비(230목)의 공통지침 따르면 22시 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, 같은 지침 Ⅶ-6.한경국립대학교 법인카드 사용·관리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카드 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,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,<br><br>- ◇◇◇◇에서는 2023.11.30.(목) "■■■■ 운영 회의" 명목으로 학생 34명이 참석하여 경기 안성시 소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으로 총1회 총680,000원을 22시30분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<br><br>- □□□□에서는 "◎◎◎◎ 초청 간담회비"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서명 누락 등 총 7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| ㅇ **행정상처분**<br>**- <기관주의>** |

# 감 사 결 과 처 분 서

| 연번 | 지 적 사 항 | 처분 |
|---|---|---|
| 6 | **수입대체경비 세입징수 보고에 관한 사항**<br><br>○ 「(교육부) 2024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」 1-4. 징수보고서 작성·제출에 따르면 분임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,<br><br>- ○○○○○은 "◇◇◇◇◇" 등 일반 과정 등 11건에 대해 총 46,519,973원을 세입 징수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관에게 징수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○ **행정상처분**<br>- **<기관통보>** |